# 제2차 핀테크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제2차 핀테크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정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 액	충 514억원 : 블라인드펀드 360억원, 프로젝트펀드 154억원 이내 핀테크혁신펀드(350억원), 성장사다리펀드(84억원), IBK동반자펀드(80억원) 공동출자						
선 정 운용사수 및 배정금액	구 분선정 운용사 수출자금액최소 결성금액필라인드모펀드 제안방식2개각 125억원각 150억원운용사 제안방식1개 이상총 110억원 이내개별 협의프로젝트운용사 제안방식미정개별 협의개별 협의○ (블라인드펀드: 모펀드 제안)제안사 당 125억원 범위 내에서, 출자요청 하되, 최소 결성금액은 150억원 이상으로 제안사가 자율제안○ (블라인드펀드: 운용사 제안)핀테크 및 혁신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최대 110억원 범위 내에서 개별 사전협의 후 별도 제안○ (프로젝트펀드: 운용사 제안)핀테크 및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투자구조를 마련하여 개별 사전협의 후 별도 제안						
	<u>၀</u>	하 선정조건은 5	그펀드 제안병	방식에만 해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일 '20.8.12.)」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 이전 한국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필요							

항 목	세부내용		
운 용 사 신청자격	○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 단,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각각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한국성장금융 타 출자사업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경우 사전 협의 필요		
접수일시	2021년 1월 28일(목) 09:00 부터 16:00까지		
심사결과 발 표	2021년 2월 중		
발표편드결성시한	최종 선정 이후 6개월 이내 펀드 결성		

## 2.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① (모펀드 제안방식) 투자대상은 법인 형태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최소)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①~④ 모두 충족)

- ① 핀테크기업: 투자금액의 50% 이상
- \* 1)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상 '핀테크기업'에 해당하거나([별첨] 참고),
  - 2)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외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기업
- ② 초기기업: 투자금액의 50% 이상
- \* 1) Seed/Early 단계에서 Pre-A 단계까지의 투자만을 유치한 초기단계 중소·벤처기업이거나, 2)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벤처)·중견기업
- ③ 우수 기술기업: 투자금액의 80% 이상
- \* 1)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TI5) 이상이거나,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발명진흥법'에 따라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
- ④ 혁신기업: 투자금액의 60% 이상
- \* 1)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상 명시된 해당 산업 영위 기업 또는,
  - 2) 해당 매뉴얼을 참고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는 주목적 투자분야 해당 기업
    - ※ 단일 투자건이 두 가지 이상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중복적용 가능
- \*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추가를 요청할 경우 협의 가능
- ② (운용사 제안방식) 해외 핀테크기업 투자 특화전략 또는 새로운 핀테크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한 구조 등 사전 협의 후 제안 가능

# 3. 주요 출자조건 \* 모펀드 제안방식에만 해당

항목		내용			
운용사 최소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2% 이상 ※ LLC의 경우 운용인력이 출자하는 경우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존속기간		ㅇ 펀드 결성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8년 이내			
투자기간		ㅇ 펀드 결성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			
납입방식		ㅇ 수시납 또는 분할납			
관리보수		<ul> <li>○ 연 2.2% 이내: 투자기간 동안은 약정총액 기준, 이후 투자잔액 기준</li> <li>○ 기준보수율 범위 내에서 조기 투자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안</li> </ul>			
성과 보수	기본	<ul> <li> 운용사가 제안한 기준수익률(IRR) 초과 시 초과이익의 최대 20%</li> <li>범위 내에서 지급</li> <li>※ 기준수익률은 최소 6% 이상</li> </ul>			
	추가	<ul> <li>금융규제 샌드박스 해당기업 및 핀테크랩 연계투자 실적에 연동하여 핀테크혁신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에게 지급될 초과이익의 10% 이내에서 지급</li> <li>※ 세부내역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li> </ul>			
운용인력		<ul> <li>○ 핵심운용인력 총 2인 이상 참여</li> <li>○ 자격 요건</li> <li>- 핵심운용인력: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li> <li>-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li> <li>※ 투자관련 경력구분 세부 내역은 제안서 제출 양식(엑셀) 참조</li> <li>○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편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 (프로젝트펀드 제외)</li> <li>○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li> </ul>			

<ul> <li>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ul> <li>단, 개인출자자(운용사의 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 운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li> </ul> </li> <li>해외출자자(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li> </ul>
<ul> <li>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li> <li>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 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li> <li>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ㅇ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ul> <li>펀드 전자보고시스템 사용 의무</li> <li>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li> <li>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li> </ul>
<ul> <li>○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인센티브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li> <li>○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출자조건(주목적투자분야 및 비율, 보수구조 등) 등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li> <li>○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li> <li>○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름</li> </ul>

####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모펀드 제안방식에만 해당

####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 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 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 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선정 취소

- ㅇ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후 금액을 말함)에 미달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이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편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제재 사항 및 기타

#### □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
  - 다만, 관련 법규 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간 출자 제한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0.12.31일(목)**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 6. 선정절차 및 일정 \* 모펀드 제안방식에만 해당

- □ 선정 절차
  - $\circ$  공고  $\rightarrow$  제안서 접수  $\rightarrow$  1차 심사(서류)  $\rightarrow$  현장실사  $\rightarrow$  2차 심사(구술)  $\rightarrow$  최종선정

#### □ 선정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1. 1. 28일(목)	제안서 접수	마감일 16:00 까지	
2021. 2월 중	최종 선정 및 선정결과 발표	개별통보	

<sup>\*</sup>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

#### □ 지원방법 \* 모펀드 제안방식에만 해당

- 출자자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퀵서비스, 우편 등으로 비대면 제출
  -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 별도 공지 예정)
- 2차 심사(구술)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8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 출자 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자사업 설명은 온라인('21.1.7일)<sup>\*</sup>으로 실시 예정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8.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프론트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4층)

□ 문의처 : 한국성장금융 프론트원센터 (02-2090-9141) E-mail : dpark@kgrowth.or.kr

2020년 12월 29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접수일 등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핀테크기업의 정의

#### ※ 출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9.10.4일자 시행)

"핀테크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 때에는 그 기업이 하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따른 주된 업종인 경우를 말하며,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그기업이 하는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 및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기업
- 나.「은행업 감독규정」 제49조 각 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기업
-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정대리인
- 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등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거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
- 바.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 그 밖의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 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

- 사.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
  - 1)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처리, 전송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 2)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 3)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업무
- 아.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각의 업종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업
  - 1) 전자카드 제조업
  - 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5)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6)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7) 자료 처리업
  - 8)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10) 1)부터 9)까지 규정 외의 업무로서 기타 정보 서비스업,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각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
  - 1) 인공지능
  - 2) 빅데이터의 분석 및 이용
  - 3) 사물인터넷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기술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
- 카.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